투자권유준칙

제정 2020.03.02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4호, 제4조,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0조는 전문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때에도 적용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 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 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 및 제7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야 한다.
 - 4.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임직원이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 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 제4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칙) 임직원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 제249조의2 및 법시행령 제271조에 해당하는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별지1호 서식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7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별지2호 서식에 의거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을 받거나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① 임직원은 별지3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별지 제1호의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④ 임직원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 제9조(투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 분류) ①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별지3호의 Part 1)를 별지4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별지5

호와 같이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초정보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평가결과 투자성향"이라 한다)과 투자자의 위험선호도(별지3호의 Part 2)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위험선호 투자성향"이라 한다)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험선호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선호 투자성향이 평가결과 투자성향보다 높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별지6호와 같이 매우낮은위험, 낮은위험, 보통위험, 다소 높은위험, 높은위험, 매우높은위험의 6단계로 분류한다.
- ④ 임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권유 적합성 확보)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의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고지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별지7호의 서면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제11조(설명의무)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별지8호의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 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전에 교부하는 경우
-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제12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 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제13조(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이하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0조제4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파생상 품 등을 투자권유할 수 없다.
 - 2.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투자자에게는 다음 각

- 목의 파생상품 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제14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9호 및 별지10호의 방식에 의거 적합성을 판단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별지11호의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하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1회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행위로서 법시행령 제54조 1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54조 2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 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행위
- 6.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 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5장 판매행위

-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허위표시 등 잘못된 정보제공) ① 회사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인쇄, 홍보물 등에 허위를 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 ② 회사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2.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및 판매시 유의사항

- 제19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20조(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1조(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 ②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 등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투자권유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는 행위.
 - 3.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4.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 5.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6.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 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7.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 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 9.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
- 10.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 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④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22조(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 대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 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1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② 임직원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 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 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3조(세부사항) 이 준칙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지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 나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
	년 월 일
투자자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 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자성향이 (높은)등급임을 고지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상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판단에 따라)투자를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상품명 및 위험등급 :(등급)

년 월 일

투자자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 제3호]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용)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
	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
	여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투자자께서 회사로부터 투자자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
	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_	
Ш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스 있으며 이로 이하여 투자자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초정보

PART 1	구 분	배 점
1.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 19세 이하 □ 20세 ~ 40세 □ 41세 ~ 50세 □ 51세 ~ 60세 □ 61세 이상	
2.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 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 은 얼마나 되십니까?		
3.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 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 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 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 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 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 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 각하십니까?	 □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 체 금융자산(부동산등을 제외)중 어느 정도의 비 중을 차지합니까?	□ 10% 이하 □ 10% 초과 ~ 20% 이하 □ 20%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40% 이하 □ 40% 초과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 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 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 위험선호도

PART 2	구 분	배 점
8.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 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필요시 판 매직원에게 설명을 요청 하기 바랍니다)	 □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예적금보다 높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PART 3			구 분	
9.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 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 품 투자펀드에 투자한 경 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 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투자기간	(년	월)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정보 변경여부

□ 기존정보와 동일	□ 정보 변경	
------------	---------	--

※ 투자자정보는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24개월 동안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됩니다.

본인은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 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투자자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담당자명: 서명/인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용)

L	그 일만투사사 투사성모 확인	^{끄서"는} 회사가 투자자의 ⁵	투사목석, 새산 및 소득상용	항, 두사경렴, 글
	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	l유를 하기 위 _호
	여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 투자자께서 회사로부터 투 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기 위해서는 "일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	H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자자의 투자위험도가 증가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법인명:	

◈ 기초정보

PART 1	구 분	배 점
1.고객님께서 운용하려는 자 금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 잉여자산 □ 사업소득 □ 장기부채(1년이상) □ 개인(직원포함)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 단기부채(1년이하)	
2.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 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은 얼마나 되십니까?	□ 3년 이상	
3.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 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 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 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 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 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 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 각하십니까?	□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 체 금융자산(부동산등을 제외)중 어느 정도의 비 중을 차지합니까?	□ 10% 이하 □ 10% 초과 ~ 20% 이하 □ 20%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40% 이하 □ 40% 초과	
6.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 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7.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 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 다. 	

◈ 위험선호도

PART 2	구 분	배 점
8.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 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필요시 판 매직원에게 설명을 요청 하기 바랍니다)	 □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PART 3			구 분	
9.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 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 품 투자펀드에 투자한 경 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 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투자기간	(년	월)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정보 변경여부

□ 기존정보와 동일	□ 정보 변경	
------------	---------	--

※ 투자자정보는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24개월 동안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됩니다.

본인은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투자자 성명: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담당자명: 서명/인

[별지 제4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별지3 Part1 기준)>

	> 문항별 배점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3년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	◈ 점수 계산 방법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로
	(예)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점/32점 × 100 = 81.3점	
•	≫ 투자성향 분류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20점이하: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 제5호]

<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

	매우높은	높은위험	다소높은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
구 분	위험		위험			위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지 제6호]

<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구로서 최대손실가능 비율이 투자원금대비 20%초과하는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의 연평균 편입비가 8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의 '최대 편입비'가 3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개발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의 연평균 편입비가 50%이상 80%미만인 집합투자 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3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구로서 최대손실가능 비율이 투자원금대비 20% 이하인 경우 - 부동산관련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의 연평균 편입비가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구로서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Commodity, REITs, 특별자산,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함.

주2)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자산유동화 관련 채권(A+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함.(투자등급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의 구분은 둘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받은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함)

- 주3)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 이상), CP(A3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함
- 주4)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A-이상), CP(A1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함
- 주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혜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음.
- 주6)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7)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각각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함
- 주8)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함.
- 주9)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음.
- 주10)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음.
- 주11) 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음.
- 주1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 분류됨.

[별지 제7호]

□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귀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년 월 일

투자자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00 위험]

에이치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 투자위험등급: 0등급 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 기 바랍니다.

- ◆ 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핵 심 사 항]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은 **원금 손실 가능성 (또는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위험에 체크).

신용위험	발행사 부도 등 위험에 따른 손실위험	
(투자-	└적격 등급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
시장위험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환 위 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	
기타위험)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의 다른 투자위험과 손익구조 등에 대해서는 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 ◆ 상대적 위험도 : 총 ()단계중 ()번째로 높음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 1. ((투자)설명서)를 (받았음, 받지 않음, 교부를 거부하였음)
- 2.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 3.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 4. (상대적 위험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했음)
- 5. (주요위험) 및 (손익구조)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재방법 】

- ▶ 투자위험등급은 회사의 자체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 위험등급별로 "적색", "황색", "녹색"으로 색상을 3단계로 차등화하되, 용지 또는 위험등급칸의 색상을 차등화한다.(위험등급이 6등급인 경우, 1∽3등급 : 적색, 4~5등급 : 황색, 6등급 : 녹색으로 분류)
- ▶ 고객 성명 및 서명란은 고객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고객보관용의 핵심사항("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핵심투자위험") 기재 Box는 전체 지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굵은 글자로 기재한다.
- ▶ 핵심투자위험은 각 금융투자상품 등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위험으로 1〜2개를 체크하되, 예시된 위험 이외의 위험인 경우에는 기타위험에 체크하고 해당위험을 판매직원이 직접 기술한다.
 - 신용등급의 투자부적격여부에 ○표 또는 체크 한다.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포함)인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신용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한다.
 - 집합투자증권은 리스크 비중이 가장 큰 편입자산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위험을 체크한다.
- ▶ 회사보관용의 내용중 상대적 위험도 괄호안과 고객확인사항중 괄호안의 글자를 고객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고객보관용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회사 보관용은 회사가 보관한다.

[별지 제9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 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I. 투자자의 재무현	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 II. 거래의 목적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거래목적	Øl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Ⅲ.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	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	가 수준):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	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	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전문			가 수준):	중 :		하: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ଖ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년 월 일 (직 위) (담당자) (서명/인) (법인명)

에이치자산운용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에이치자산운용이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 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 년 월 일 에이치자산운용 (담당자) (서명/인)

[별지 제10호]

장외파생상품 적합성 판단 방식

	구 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T E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인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법인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	· - - - - - - - - - - - - - - - - - -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개인 사업 자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아래와 같음
 - 가. 주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초과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나. 경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다. 위험: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 '경고'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 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년 월 일

투자자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 제12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 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합니다.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 사리분별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합니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4)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 니다.
-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필요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이 추 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 가능
- ▶ 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3~4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다만, 이러한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접촉 기록 및 특이사 항 등을 기록·유지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5)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합니다.
-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른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령투자자에 관한 위험요인 점검항목을 추가* 점검
 - * 예)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고령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 o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 o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야 합니다.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

-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한 경우
- 과도한 신용거래가 발생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 최근 주문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예: 투자자성향 상 향 등)이 있는 계좌
-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계좌
- ▶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 필요
- ▶ 조력자를 지정해둔 경우라면 조력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 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실무적으로는 창구에서 고객이 녹취전화로 조력자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하여 동의내용을 녹 취해두는 것이 바람직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 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 우에도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회사가 투자권유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 하였음에도 고객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이의 판매를 허용 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 고객은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 고객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 의를 얻어 녹취를 해두는 것이 것이 바람직*
 - * 서명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별도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상품가입신청서 상의 본인 서명 옆에 조력자의 서명을 받아두면 될 것임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후모니터링 강화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 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해피콜 대상을 내규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초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에는 반드시 실시
- ▶ 다만, 고객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거나 관리직 직원이 판매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확인을 한 경우("3.(4)" 또는 "5.(2)")에는 해피콜을 생략 가능

6.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는 좋습니다.